

부 칙<2021.10.01.>

경운대학교 성적평가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경운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성적평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위원은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학처 교무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 및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변동이 있을 경우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적평가 및 재수강의 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2. 성적평가 및 재수강의 운영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
3. 통산 4회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자 제적처리 및 기회부여를 위한 학업수행에 관한 사항
4. 성적평가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
5. 성적평가에 관련된 자료수집, 평가기록, 전산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성적평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